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4.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열람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며,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삭제하거나 정정 등의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고객이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신용정보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 38 조 제 5 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6. 본인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7.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 대표전화 - (02) 2122-4000 홈페이지 www.nicecredit.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대표전화 - (02) 1577-1006 홈페이지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대표전화 - (02) 708-1000 홈페이지 www.koreacb.com

8. 본인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전송 요구 및 보장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고객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고객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본인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통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에 따른 수수료는 인적·물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11.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의 종류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 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5.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

리딩에이스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담당자

소속 : 준법감시팀 / 전화번호 : (02) 6268-6761 / 주소 : 서울시 영등포 의사당대로 143, 4층

□ 여신금융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 (02) 2011-0737 /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32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